교내 홍보게시물 관리규정

- 제1조 (목적) 본 규정은 교내 홍보게시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보전달의 효율성과 유용성을 높이고, 캠퍼스의 쾌적한 환경과 면학 분위기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용어) ① 홍보게시물이란 본교 구성원에게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홈페이지 및 전자 게시판, 교내 옥내·외 장소에 게시하는 현수막 및 각종 배너, 게시물 및 기타 인쇄물(신문, 소책자, 팜플렛, 도서 등 포함)을 말한다.
 - ② 장소란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캠퍼스 내에 설치를 승인한 옥내·외 게시판과 게시대,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자게시판(DID: digital information display)을 말한다. 장소는 공용 게시 장소와 개별 게시 장소로 구분한다.
 - ③ 공용 게시 장소란 대학의 공용 게시판 및 공용 게시대,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 및 전자 게시판을 말한다.
 - ④ 개별 게시 장소란 학생회(단체) 및 학과(부서)의 게시판 및 게시대, 홈페이지 및 전자게시판 을 말한다.
 - ⑤ 관리자란 홍보게시물의 게시 승인 및 관리를 담당하는 다음 부서를 말한다
 - 1. 현수막 : 시설관재팀
 - 2. 게시판 및 게시대 : 학생지원팀
 - 3. 홈페이지 게시판 : 정보전산팀
 - 4. 전자게시판 : 홍보팀
 - ⑥ 현수막 작업의뢰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수막 게시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.
 - ⑦ 불법 홍보게시물이란 승인받지 않거나 지정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한 일체의 홍보게시물을 말한다.
- 제3조 (게시 승인 및 관리) ① 홍보게시물은 대학 홈페이지 게시판과 전자 게시판 활용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.
 - ② 모든 홍보게시물은 대학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게시하여야 한다.
 - ③ 홍보게시물에는 반드시 게시 주체가 명시되어야 한다.
 - ④ 홍보게시물 내용은 대학의 교육 목적과 교육 이념 등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 - ⑤ 홍보게시물은 유형별로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[별표 1]과 같이 게시할 수 있다. 학생회 및 학생단체는 학생지원팀을 통해 신청한다.
 - 1. 홈페이지 게시판 : 정보전산팀
 - 2. 전자게시판 : 홍보팀
 - 3. 현수막 : 시설관재팀
 - 4. 공용게시판 및 학생회(단체)게시판 : 학생지원팀
 - 5. 학과(부서) 게시판 : 학과 및 부서장
 - ⑥ 현수막은 다음 경우에 게시할 수 있다.
 - 1. 학생 모집과 대학 홍보를 위한 대학 본부 게시 사항
 - 2. 학생 특별활동기간 행사, 학교 행사, 외부초청행사 등 승인 게시 사항
 - 가. 사무처장 승인: 학과, 행정부서, 기타 교내 외 기관의 현수막
 - 나. 학생처장 승인: 학생회, 학생단체, 동아리 등

- ⑦ 현수막은 다음 경우에 게시할 수 없다.
- 1. 부서 및 학과의 내부 행사, 홍보, 축하 등의 현수막
- 2. 공용 게시 장소 직립형 현수막 (스탠딩 배너)
- ⑧ 현수막 이외의 홍보게시물은 다음의 경우에 게시를 허가한다.
- 1. 학부(대학원) 학생회 및 학생단체 주관행사 홍보물
- 2. 행정부서 공지 및 주관 행사 홍보물
- 3. 본교 내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및 이에 준하는 행사 홍보물
- 4. 대학 구성원에게 필요한 외부 기관(단체)의 홍보물
- ⑨ 다음 홍보게시물은 게시를 허가하지 않는다.
- 1. 본 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 (규격, 내용, 디자인 등)
- 2. 미관·환경 및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홍보게시물
- 3. 현수막 설치 및 인쇄물 게시 가용 장소가 없을 경우
- ⑩ 관리자는 게시 허가 사항을 기록한다.
- ① 관리자는 게시판의 청결과 미관 유지를 위해 오염을 일상적으로 제거하고 허가기간 경과 게 시물과 불법게시물을 즉시 제거한다.
- 1.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되거나 관리자 승인이 없는 게시물
- 2. 교내 도로 및 건물내 바닥, 벽면, 전신주, 가로등, 나무 등 게시물
- ② 공용 및 학생(단체) 게시물의 종합관리는 학생지원팀에서 하되 학내 올바른 게시문화 유지를 위해 [별표 2]와 같이 관리를 지원한다.

제4조 (홍보물의 규격 및 게시) ① 홍보게시물은 다음 규격으로 제작하여야 한다.

- 1. 현수막 : 가로 5m x 세로 0.9m,
- 2. 게시물(게시판 부착용) : A4. A3. A2
- ② 홍보게시물은 다음 수량 범위에서 게시한다.
- 1. 현수막 : 옥내·외 각 1매 이내
- 2. 게시물 : 교내 10매 이내, 교외 기관 5매 이내
- 3. 기타 인쇄물 : 20부 미만
- ③ 홍보게시물의 게시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- 1. 현수막 · 게시물 : 행사일까지 7일 이내
- 2. 기타 인쇄물 : 비치일부터 2주 이내
- ④ 현수막은 관리부서에서 다음과 같이 게시한다.
- 1. 현수막은 1단으로 하여 도로를 횡단하여 설치하지 않는다.
- 2. 정문 진입로 우측으로 대학버스주차장 입구부터 대강당 앞, 남문 진입로 좌 .우측
- 3. 대학 정문 및 남문 좌. 우측으로 대학본부 결정 사항 한정 게시
- ⑤ 학생모집 및 대학 홍보, 기타 긴급사항 등 대학본부 게시 사항은 게시물의 유형, 규격, 장소, 수량, 기간 등을 예외로 한다.
- ⑥ 게시물 부착 및 탈착
- 1. 모든 게시물은 게시판 사용 수칙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.
- 2. 모든 게시물은 규격에 맞게 제작하여 게시판의 미관을 손상하지 않도록 바르게 부착하여야 한다.
- 3. 허가기간이 지난 홍보게시물 및 잔유물(접착테이프 등)은 자진 제거하여야 한다.

- 4. 불법게시물은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.
- 가. 관리자 승인이 없거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게시 또는 비치 게시물
- 나. 교내 도로 및 건물내 바닥, 벽면, 전신주, 가로등, 나무 등 부착 게시물
- 다. 공용 게시 장소 배너
- ⑦ 홍보게시물의 부착 및 제거 과정에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, 관리자 요청시 제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- 제5조 (인쇄물 게시판 및 게시대의 제작 및 보수) ① 건물의 주 출입층에는 공용 게시판과 공용 게시대에 한하여 설치한다.
 - ② 공용 게시판과 게시대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건축팀에서 설치하고 보수한다.
 - ③ 학과 및 부서의 옥외 게시판과 게시대는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 및 부서의 출입문 측면에 자체 설치한다.
 - ④ 학생회(단체) 게시판의 제작 및 보수는 학생지원팀에서 건축팀에 요청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제정 <2015 제25차 교무위원회>)